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2월 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체료 징수, 연체기간별 고정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단순히 확인·재기재하는 경우 법령 개폐시 동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 입법 경제에 부합하지 않음.

나.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개정(2022.4.20.)된 바 있으나, 조례 제5조 제3항은 개정 전 연체요율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실효성 있고, 입법 경제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을 적용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
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10. 19.~11. 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김광원(☎2133-9755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 다음 각 호”를 “경우에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용료) ①~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2퍼센트</p> <p>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3퍼센트</p> <p>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4퍼센트</p> <p>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: 연 15퍼센트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용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경우에</u> <u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</u> <u>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</u> ---- 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·징수시 적용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버스정책과 김광원 주무관 (☎02-2133-9755)